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1093호
- 다. 제출일자 : 2016. 4. 7
- 라. 회부일자 : 2016. 4. 12

## 2. 제안이유

-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절차 및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장례지원 대상자(안 제2조)
- 다. 장례식의 종류(안 제3조)
- 라.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안 제4조, 안 제5조)
- 마. 장례비용 및 수당 등(안 제6조, 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2) 입법예고 결과 : 원안참조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 희생에 대한 경의(敬意)와 애도(哀悼)를 표하기 위해 장례종류 및 장례절차 등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항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 조례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

- 2001년 이후 ‘서울시 소방공무원 순직자’ 발생 주요현황을 살펴 보면,
  - ‘홍제동 주택화재(2001년)’ 순직 6명,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2008년)’ 순직 3명, ‘구조보트 전복사고(2010년)’ 순직 2명으로 총11명을 기록하고 있음.
- 이처럼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응당 시가 합당한 장례 의식을 거행해야 함에도, 현행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관례적으로 소방서 후정 또는 소방서 차고에서 소방본부장葬 혹은 소방서장葬으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임. ([표 1] 참조)

[표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순직자 발생현황

구 분	은평구 홍제동 주택화재 사고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	구조보트 전복사고 (광진 수난구조대)	비 고
순 직 일	2001. 3. 4	2008. 8. 20	2010. 12 .3	
순직인원	6명	3명	2명	
보 상	순 직	순 직	순 직	
장 례 식	서울소방방재본부葬	은평소방서葬	광진소방서葬	
장례장소	서울시청 후정	은평소방서 후정	어린이회관 축구장	
장례비용	123,800천원	123,000천원	74,000천원	

- 참고로,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의식규칙」,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에 근거하여 순직자 및 전사자에 대한 애도와 경의

를 표하고 그에 합당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복 공무원인 경찰·군인과 형평을 맞추고, 시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절차와 장례식 거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본안의 취지는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여겨짐.

[표 2]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현황

연번	본부	조례진행상황	연번	본부	조례진행상황
1	부산	하반기 추진예정	9	강원	하반기 추진예정
2	대구	하반기 추진예정	10	충북	하반기 추진예정
3	인천	입법 진행중	11	충남	조례제정완료
4	광주	입법 진행중	12	경북	입법 진행중
5	대전	하반기 추진예정	13	경남	하반기 추진예정
6	울산	입법 진행중	14	전북	조례제정완료
7	세종	조례제정완료	15	전남	하반기 추진예정
8	경기	시의회 상정예정	16	창원	하반기 추진예정

## ■ 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

### 가.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담고 있다고 여겨짐.

## 나. 장례지원 대상자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장례지원 대상자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의 순직 인정 절차<sup>1)</sup>를 따른 것이며, 소방공무원의 재직 중 사망에 대한 순직여부를 상위기관이 제3자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재난현장에 의용소방원, 사회복지요원, 의용소방대 등 소방공무원 이외의 보조 인력이 함께 출동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 그 시행 과정에서 이분들의 현장활동 영역 및 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 여부 및 시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장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 아닌 보조인력의 추가는 본 조례안 제명 중 ‘순직 소방공무원’을 포괄적 의미의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 다. 장례식 종류 및 주관자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인이나 경찰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

1)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재난현장에서 사망 시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에 순직인정요청을 하면 국민안전처는 이를 검토하여 회신하고 있음.

[표 3] 장례식 종류 및 주관자 (안 제3조 관련)

	소 방		군 인	경 찰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안)		군예식령 (대통령령)	경찰의식규칙 (경찰청 예규)
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 (안 제3조)	종 류	1. 서울시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 3. 육·해·공군장 4. 부대장	1. 경찰장 2. 경찰관서장 3. 가족장
	주 관 자	1. 서울시장: 시장 2. 소방관서장: 소방관서의 장	1. 국군장: 장관 2. 합참장: 합동참모의장 3. 각군장: 각군참모총장 4. 부대장: 각군지휘관	1. 경찰장: 경찰청장 2.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의 장

- 상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례식의 종류로는 서울시葬, 소방관서葬, 가족葬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 이 중 서울시葬과 소방관서葬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유족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의사결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 한편, 서울시葬은 시장, 소방관서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하되 서울시葬은 시장의 판단 하에 장례주관자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 역시 당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라.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산하 또는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두고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장례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집행위원회’는 장례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위원회는 순직자 발생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써 이처럼 이원화 한 것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합리적이라 사료되고,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 역시, 시장이 시 산하 또는 소방관서의 형편에 맞게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권자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